##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853

발의연월일: 2025. 1. 31.

발 의 자: 강득구·김남근·김남희

김병주 · 김성환 · 김준혁

김태선 · 송재봉 · 이광희

임광현 · 정동영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군인과 경찰 등 공직자가 상당 기간을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 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.

그런데,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이나 살인, 강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음.

이에 연금 대상자가 내란, 외환, 살인,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형이 확정될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내란 등 국가안보에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지급 받은 급여를 환수함으로써 자격이없는 사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 공헌에 따른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(안 제38조의2 신설 등).

##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2항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 또는 제2항에"를 "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"로 한다.

②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「형법」 제2편제1장(내란의 죄), 제2장(외환의 죄), 「군형법」 제2편제1장(반란의 죄), 제2장(이 적의 죄), 「국가보안법」(제10조는 제외한다)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받은 급여 중 국가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

제38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2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) ① 이 법을 적용받고 있 거나 적용받을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 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「민법」 제 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 니한다.

- 1. 「국가보안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- 2. 「형법」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,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 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  - 가. 「형법」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, 제297조, 제297조의2,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, 제301조의2, 제302조,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, 제332조(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
  - 나.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, 제3조제3항 및 제6조(제2조제1항과 제3조제 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
  - 다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5조의2,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
  - 라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(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
  - 마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제8조 및 제

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

- 바. 「군사기밀 보호법」 제11조, 제11조의2, 제12조, 제13조, 제13 조의2 및 제15조의 죄
- 사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
-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자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급여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당시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급여의 환수 등) ① (생	제16조(급여의 환수 등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
	사람이 「형법」 제2편제1장
	(내란의 죄), 제2장(외환의 죄),
	「군형법」 제2편제1장(반란의
	<u>죄), 제2장(이적의 죄), 「국가</u>
	보안법」(제10조는 제외한다)에
	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
	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받
	은 급여 중 국가가 부담한 부
	담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 이 경
	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
	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
	<u>한다.</u>
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	③제1항 및 제2
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	항에
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	
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	
하여야 한다.	
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	<u>④</u> <u>제1항부터 제</u>
제2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	<u> 3항까지 규정에</u>

때에 환수금 또는 이자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 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징수할 수 있다.

④· ⑤ (생 략)

제38조(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38조(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) ① ~ ③ (생 략) ④ 복무 중의 사유로 「형법」 | <삭 제> 제2편제1장(내란의 죄)ㆍ제2장 (외환의 죄), 「군형법」 제2편 제1장(반란의 죄) · 제2장[이적 (利敵)의 죄], 「국가보안법」 (제10조는 제외한다). 「군사기 밀 보호법」(제13조의2와 제15 조에 한정한다)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 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 하되,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 다. <신 설>

•

⑤· ⑥ (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)

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38조의2(이 법 적용 대상으로 부터의 배제) ① 이 법을 적용 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대상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서 제외하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 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 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 다.

- 1. 「국가보안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- 2. 「형법」 제87조부터 제90조 까지, 제92조부터 제101조까 지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사람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 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. 「형법」 제250조부터 제 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, 제287조부터 제29 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, 제297조, 제297조의2,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, 제3

01조의2, 제302조, 제303조

와 제305조의 죄, 제332조

- (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
- 나.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 기 전의 「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1항, 제3조제3항 및 제6조 (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 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 의 죄
- 다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 5조의2,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
- 라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 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 (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)의 죄
- 마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

   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제

   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

  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

   바. 「군사기밀 보호법」 제1

   1조, 제11조의2, 제12조,

제13조, 제13조의2 및 제1 5조의 <u>죄</u>

- 사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95 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 3의 죄
-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 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자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 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요 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